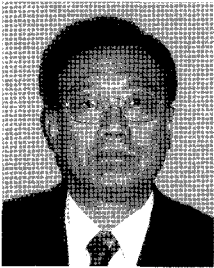


왜 의무자조활동자금이 필요한가?



나 상 진 부장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축산자조금사업’이란 동일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들(광의적으로는 동일 축종과 관련된 산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육계생산자가 생산한 닭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대금에서 일정의 소액을 떼어 적립해 두었다가 참여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닭고기의 소비확대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교육홍보사업,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품질·안전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자교육사업 등 생산자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일을 공동으로 스스로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제도이다.

축산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자조금은 1990년 4월에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돼지·닭·우유에 한하여 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 6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그대로 이전되어 그 간 각 축종별 협회에서 운용하여 온 임의자조금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자발적으로 조성한 자조금 해당액 이내에서 보조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실시한 임의자조금 제도는 희망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라 그 조성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파력과 영향력은 높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TV광고 등 효과적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더불어 그 사업수행으로 인한 혜택을 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된다는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

이아말로 자조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 과제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문제 때문에 의무자조금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던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된 의무자조금은 동일한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끌고루 부담하고 모두 혜택을 본다는 자조금제도의 근본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 의무자조금제도 성패의 관건은 업계와 육계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수요건이며 이의 시행과정에서 대다수 관련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희망하는 사람만이 내는 임의자조금과는 달리 그야말로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특수집단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회비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전체의 목적을 위해 공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조금 운용주체는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과 효과를 얻는다는 수혜감을 갖게 하여 자조금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등 기본적

인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실로 자조금 사업은 문자의 뜻 그대로와 같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동된 이익을 위해 서로 경제적 부담을 하고 그 사업으로 경제적 수혜와 이득을 동시에 본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자조금조성을 위한 돈을 냈으므로 인하여 그 효과를 수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조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무자조금 제도가 강조되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의무자조금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생산자 구성원의 예외없는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그 부담수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입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조금을 부담한 만큼 얼마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양돈자조금 운용사례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자. 전남대 농대 조광호 교수가 미국의 양돈자조금 평가 조사· 분석기관인 텍사스 A&M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 『미국의 양돈자조금 운영사례』에 의하면 생산자가 납부한 자조금 1달러 당 5달러(500%) 이상의 수익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마디로 생산자가 자조금 1원을 냈으므로 인하여 5원 이상을 더 벌어들이는 효과를 보았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자조금 사업은 잘 운용되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자조금 제도는

축종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축종에서 자조금 사업을 하여 특정 축산물의 소비홍보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반대로 타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예로 들자면 양돈자조금이 활성화되어 돼지고기 소비촉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대체재의 성격이 있는 닭고기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축산물 소비량은 일정부분 늘어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경제원리상 축종간 경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축산물소비와 관련된 축종별 제로섬게임 이론은 축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증진, 생산자교육을 통한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등 자조금 사업의 긍정적인 다양한 부분을 떼어놓고 볼 때의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말이다. 어찌하였거나 육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라도 빨리 육계자조금사업을 정착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더불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임의자조금 제도로는 많은 금액의 자조금을 거출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한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추진하여 충분한 금액의 자조금을 조성, 닭고기 소비촉진 TV광고 등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을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생산자가 조성한 자조금 금액만큼 보조지원을 해 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제도란 말인가?

전체 사회·경제적인 추세가 점점 정부의 직

접개입이 줄어들고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경쟁원리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농업분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육계의 경우 주기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업계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여 예측이 힘든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마당에 전 육계생산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한 시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지금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육계생산자 스스로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국내 육계생산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닭고기에 대하여만 자조금을 거출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조금 사업으로 수혜를 얻는 관련자 모두(특히 수입업자들)가 참여케 되어 수혜자 전체가 빠짐없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업여건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조금 사업, 특히 의무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은 다시금 강조되어 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육계자조금 사업이 조속히 정착되어 계육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해외시장까지 개척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한 육계농가의 소득증진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양계관련 단체 등 범 육계인이 힘을 합하여 자조금 사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